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Special Disability Trust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재산 정리

Getting Things Sorted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

호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재산 정리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

호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7

ISBN: 978 1 921130 79 3

이 소책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승인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재발행될 수도 있으나 영리목적이나 판매용으로는 재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재발행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Commonwealth Copyright Administration** 또는 **Attorney-General's Department**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행과 그에 따르는 권리에 대한 요구나 문의 사항은 **Commonwealth Copyright Administratio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Robert Garran Offices, National Circuit, Canberra ACT 2600**로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ag.gov.au/cca>상에 게시해야 합니다.

목차

머리말.....	1
이 책자가 다루는 내용.....	1
이 책자를 이용하기 전에.....	1
이 책자의 개요.....	2
저술 경위에 대한 몇가지 요점.....	2
1절: 신탁과 유언장의 구성 인물과 요소.....	5
수탁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6
수탁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6
수익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7
신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요?.....	7
신탁을 유지 관리하는 데 그 밖에 다른 비용이 드나요?.....	8
2절: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과 사회 보장: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일반 규정 및 면제 조치	
일반 규정.....	9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면제 조치.....	9
중증 장애인을 위한 면제 조치.....	10
소득 조사.....	10
자산 조사.....	10
중증 장애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면제 조치.....	11
증여세 면제.....	11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	12
‘중증 장애’인이란 누구인가요?.....	13
중증 장애인은 복수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둘 수 있나요?.....	13
‘합리적인 수용시설과 케어의 필요성’이란 무엇인가요?.....	13
신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에게 댓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14
케어나 수용 시설 이외의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14
신탁이라면 모두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자격이 주어지나요?.....	15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5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나요?.....	16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6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6
모든 규정을 고려해 보았는데 제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해야 하나요?.....	17
3절: 샘플: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	19
샘플: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	20
4절: 마치는 말.....	43
저자에 대하여.....	43

머리말

이 책자가 다루는 내용

장애인을 둔 가정 특히 장애인의 부모들은 종종 ‘내가 나의 장애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으나 특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자와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 책자는 여러 선택지를 설명함으로써 일을 좀더 손쉽게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자는 일반적으로 장애 문제를 고려한 미래 설계는 물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어떻게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조 (사회 보장 및 보훈 수당) 면제 조치가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 책자에서 언급하는 소득 보조에 대한 내용이 귀하 또는 장애인에게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Centrelink** 또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의 소득 보조 자격에 준합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기 전에 신탁 설립 대상자가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규정(13 페이지 참조)에서 요구하는 ‘중증의 장애’ 인인지 **Centrelink** 나 **DVA**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중증 장애’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소득 보조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는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고 이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고도의 지원과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산 정리 및 제공과 관련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 ▶ 법률 및 경제 자문을 얻는 방법을 포함하여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결정할 때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 ▶ 후견인 및 수용 시설과 케어 옵션이 어떻게 귀하의 능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 지원 및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 책자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귀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귀하가 놓여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해당되고 중요한지는 가정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고려해야 할 능력 수준은 각기 다릅니다. 이용가능한 자원과 가족 구성원 및 장애인의 의견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법률이나 회계, 경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3절에 제시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 샘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가족과 특히 중증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한 재산 설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연락처와 기타 다른 정보 출처는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개요

1절, 신탁과 유언장의 등장인물과 구성요소에서는 신탁과 유언장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과 그 의미를 고찰합니다. 또한 어떻게 신탁이 운영되는지를 수탁자와 장애인의 관점에서 간략히 바라보는 한편 신탁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상의 필요조건, 보고 의무, 세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결히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과 사회 보장에서는 소득 조사와 자산 조사(사회 보장 수당이나 보훈 수당이 발생할 때 적용됨)가 어떻게 신탁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에 대한 호주 정부의 구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절, 샘플: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는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의 샘플로서, 신탁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법규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꼭 필요한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 법규들이 운용되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법규들이 이 책자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술 경위에 대한 몇가지 요점

누가 이 책자를 읽어야 하나요?

이 책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중증 장애인의 부모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귀하'는 기본적으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이 책자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이 관련자 중 장애인이 있을 때 재산 정리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들입니다.

'장애'와 '중증 장애'

소득 보조 면제 조치가 본 맥락(13페이지 참조)에서 정의되는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규상의 정의로부터는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둔 부모나 그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재산 정리 방법으로서의 신탁 설립이나 유언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자기 자신의 경제 문제와 케어, 수용 시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자에서 다루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보조 및 사회 보장, 보훈 수당

이 책자는, 2006년 9월20일에 시행된 면제 조치를 설명할 때 ‘소득 보조’ 을 언급합니다. 이 규정은 DVA와 Centrelink에서 지급하는 혜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간결한 설명을 위해 주로 소득 보조라는 표현을 Centrelink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당과 DVA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 모두를 다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금전’, ‘자산’

이 책자에서는 개인이나 신탁의 재산을 ‘자산’ 또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재산’ 이란 단순히 땅이나 동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금전이나 주식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산도 포함합니다.

신탁과 유언장: 귀하의 생전 또는 사망한 후에 마련

이 책자는 신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 보조 면제 조치가 신탁의 메카니즘을 통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생전 신탁을 설립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귀하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신탁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이든 유언 신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규와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이 점은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책자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

신탁과 유언장의 등장 인물과 구성 요소

신탁은 신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수탁자**와 그 신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익자**간의 법적 관계입니다. 신탁의 본질은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의 재산을 돌보는 한편 현명하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이용하는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익자는 신탁으로부터 조건에 명시된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신탁에 대한 정보 및 수탁자가 어떻게 신탁을 운영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고있는 신탁의 종류에 따르는 조건은 보통 **신탁 증서** 또는 **유언장**과 같은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탁 증서는 필요로하는 내용에 따라 단순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법률 문서로서 상술하는 내용으로는:

- ▶ 누가 수탁자가 되며;
- ▶ 수익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
- ▶ 언제 어떻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될 지;
- ▶ 수탁자가 고려해야 할 점들;
- ▶ 수탁자의 기타 권리와 의무.

증서로 신탁을 설립하는 사람을 보통 **양도자**라고 부릅니다. **양도자**는 세제상의 이유로 종종 관계없거나 더 먼 가족 구성원이 되며, 수익자가 되지 않고 이 점외에는 신탁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경우 이 사람을 **주요 수익자** 또는 **특별, 첫번째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 밖의 수익자 즉, 중증 장애인이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을 나눌 자격이 있거나 해당 신탁으로부터 더이상 도움을 필요로하지 않는 사람들을 **잔여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신탁 증서에는 또한 **위탁자** 즉, 수탁자와는 별도로 새로운 수탁자나 수익자를 지명하거나 해당 신탁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그 신탁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보통 중증 장애인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되며 재산을 해당 신탁에 기부합니다.

신탁에 기부된 재산을 **자본**이라 부르며 신탁은 보통 그 자본을 토대로 소득을 얻는 데, 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은행 예금에 붙는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유 재량 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양한 사람들 중 누구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언 신탁은 유언장하에 설립된 모든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용어를 더 본질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신탁 즉, 세제상의 잇점을 갖는 유언장하에서 설립되는 신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유언장을 만드는 사람을 **유언자**(여성의 경우 **여성 유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 용어는 남녀 모두를 포괄함)라고 부릅니다. 유언장은 **유언 검인 집행자**(여성의 경우 **여성 유언 검인 집행자**라고 불리기도 함)를 한 사람 또는 복수로 지명해 유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합니다. 유언 신탁의 경우에는 또한 수탁자를 지명하게 되는 데, 이 때 수탁자는 유언 검인 집행자와 동일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언자가 사망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그 유언자의 **유산**입니다. 해당 유언장하에서 이 유산을 나누는 사람들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탁자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신탁과 관련한 가장 필수적인 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성인데, 즉 수탁자는 해당 신탁의 조건에 준하여 수익자의 이익에 복무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재량 신탁이라면 행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달려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수탁자가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 신탁 증서나 유언장 (15페이지 참조)의 조항을 통하여 이 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 참조.**

수탁자의 의무를 간략히 정리하면:

- ▶ 신탁을 해당 조건에 준하여 운영하고;
-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빈도로 신탁의 기금을 쓸 것인가 또는 재산을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며;
- ▶ 신탁의 재산을 신중히 투자하고 해당 신탁이 담고있는 방침에 준해 운영하며;
- ▶ 신탁 재산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 ▶ 필요하다면(신탁의 경비로)전문가의 조언(법률, 경제, 회계, 의료 및 기타)을 구하며;
- ▶ 자산및 의무,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필요할 경우 수익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 수익자가 소득 보조 자격이 있을 경우 **Centrelink** 또는 **DVA**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탁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수탁자의 권리로는:

- ▶ 적절한 한도내에서 신탁으로부터 관련 경비를 충당하고;
- ▶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길 경우 **Supreme Court**에 조언과 방향을 요청. 중대한 의문이란, 예를 들어 신탁 증서가 표현된 방식이 애매모호하거나, 결과적으로 신탁의 규정을 위배하게 될 수도있는 어려운 선택 사항이 등장하거나, 해당 신탁이 평범하지 않거나 색다른 것을 필요로 할 때 등이 포함됨;

- ▶ 신탁 증서 또는 유언장이 수탁자에게 지불(단,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직계 가족 구성원이라면 해당되지않음: 14페이지 참조)하도록 명시한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의 댓가를 신탁으로부터 받음. 수탁자에게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데, 그 이유는 수탁자에게는 여러가지 책임과 함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중증 장애인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기위해 해야할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임;
- ▶ 추가로 수탁자를 지명하거나, 원래의 수탁자가 역할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를 넘겨받을 수있는 새로운 수탁자로 대체해야 함.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많은 부분은 각 주의 법규에 따라 규제됩니다.

수익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수익자의 근본적인 권리로는 신탁이 해당 조건에 준하여 운영되고, 수익자가 희망할 경우 수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희망 사항을 표현함으로써 수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탁 증서나 유언장이 허용하지 않는 한 수탁자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익자가 해당 신탁이 적절히 이행되지않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비용이 크게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장애인 수익자는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는 해당 신탁의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나 수탁자는 장, 단기 고려사항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데 특히 신탁이 다년간 지속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금 당장 신탁의 자금을 모두 써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돈을 모두 사용해 나중에 수탁자에게 활용가능한 자원이 전혀 남지않게 될 상황이라면 특히 더 현명하지 못합니다.

예

David은 현재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의 정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게는 형 Michael이 유일한 수탁자로 되어있는 신탁이 있습니다. 이 신탁은 David이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David은 집의 일부를 고치고 싶어합니다.

Michael도 집을 고치면 더 보기좋고 생활하기 편하므로 수리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한편, 지금 집수리에 돈을 쓰고 나면 나중에 David이 계속해서 살 수있도록 집의 상당한 부분을 고쳐야 할 때 정작 충분한 자금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Michael은 수탁자로서 집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것은 해당 신탁 증서가 상술한 수탁자의 권리 범위안에 해당되며 수익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신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요?

신탁은 세계상으로는 별도의 법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취급되는 데 즉, 신탁에는 그 자체로 세계상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수탁자도 소득 신고를 해야하며 필요한 만큼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의 자산에서 세금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종종 소득에 근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신탁이 되며 세금은 소득을 얻는 수익자가 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계상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할 경우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신탁의 경우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한계점이 해당되지 않으며 높은 세율(개인 최고 세율)이 신탁이 얻은 소득(즉, 아직 수익자에게 분배되지 않았거나 수익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으로 성립된 신탁 즉, '전통적인 형태의 순수한 유언 신탁'에는 보통의 개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책자는 세계상의 각기 다른 구조에 대한 찬반 양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 및 경제 전문가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귀하가 살아있는 동안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할 경우, 우선은 소액의 자산만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나머지 상당한 액수의 자산은 귀하의 사후 유언장을 통해 기부할 의도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른 비용을 동반할 수도 있으므로 신탁을 설립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탁을 유지하는 데 그 밖의 다른 비용이 드나요?

수탁자가 회계사를 두어 회계 장부와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탁자가 회사일 경우는 해당 회사를 설립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회계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용과 신탁 설립에 따르는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수수료는 귀하가 지금 신탁을 설립할 것인지, 또는 유언장을 통해 신탁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설립하지 않을 것인지, 어떠한 자산을 언제 신탁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을 위한 미래 설계 책자 참조.

2절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과 사회 보장: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일반 규정과 면제 조치

일반 규정

호주의 사회 보장 제도는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소득 조사와 자산 조사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가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조 액수는 위의 두 소득 및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산됩니다. 두 조사 중 소득 보조 금액이 낮게 나온 결과로 지급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계 조사 하에서는 제3자 및 개인 신탁, 회사에 제공되는 증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귀하와 귀하의 신탁 또는 설립하려고 하는 신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 및 경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지급 액수를 포함해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 또는 **DV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이 정보는 웹사이트 www.centrelink.gov.au 와 www.dva.gov.au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면제 조치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는 신탁에 적용되는 규정의 충격을 줄임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마련하려고 하는 가정을 격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의 전반적인 취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신탁에 적용되는 보통의 가계 조사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것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특권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 보장 수당이나 보훈 수당에 의지(또는 가까운 미래에 의지할 수 있음)하거나 자신들의 기금을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이전할 경우 잠재적으로 소득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탁이 이러한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적용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규정들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신탁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케어와 수용 시설** 제공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 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기 전에 **Centrelink** 또는 **DVA**에 문의해 설립하려는 신탁의 대상자가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의 규정 (13페이지 참조)에서 요구하는대로 ‘중증 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면제 조치

소득 조사

- ▶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해당 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소득 조사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용 시설이나 케어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신탁이 기금을 사용할 경우 그 장애인의 소득은 소득 보조 심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자산 조사

- ▶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수익자일 경우, 최대 \$500,000까지의 과세 대상 자산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 은 자산 조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즉,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조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뜻함. ‘과세 대상 자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www.centrelink.gov.au 와 www.dva.gov.au 에서 일반 자산 조사 규정을 참조하거나 가까운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 또는 DV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요 가옥도 자산 조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초과 자산이 주요 수익자의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되기 전에 과세 대상 자산의 최고 \$500,000에 덧붙여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옥까지 소유할 수 있음을 뜻함.

예

2007년 1월1일 현재 중증 장애인인 Carol을 위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700,000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수익자인 Carol을 위한 가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 조사에 적용되는 자산은 자산 조사 면제범위(2006년 9월20일 현재 \$500,000)를 넘는 ‘초과’ 액입니다. 즉, 가옥과 자산 조사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00,000을 빼고 난 후 남은 \$200,000에 대하여 자산 조사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Carol은 가계 조사상 유일한 가옥 소유자로 평가됩니다. Carol의 기타 과세 대상 소득과 자산에 준하여 Carol의 소득 보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대상의 자산 조사 면제 조치는 처음인 2006년 9월 20일 시점에서 \$500,000로 설정되고 매년 물가 지수에 연동하며 모든 시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사용된 후 신탁이 다시 자산을 채워 넣었을 경우 여전히 최대 한계선까지 면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 ▶ 자산 조사 면제 액이 물가 지수에 연동하므로 신탁이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조 지급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액수도 매년 달라집니다.

예

어느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2006년 9월 20일 현재 \$500,000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1일 현재 자산 조사 면제 범위는 물가에 연동해 \$510,000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신탁은 \$20,000의 소득을 얻고 \$15,000을 지출한 결과 2007년 7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505,000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자산은 물가 연동 한계선인 \$510,000 미만이므로 이 신탁의 어떠한 자산도 자산 조사 규정하에서 심사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면제 조치

증여세 면제

- ▶ 누구든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인 주요 수익자와 그 파트너의 경우는 그 증여의 출처가 오직 아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주요 수익자가 유언장하에서 자산을 받았거나;
 - 제1차 수익자가 국민 연금 사후 수당을 받았을 때;그리고 주요 수익자가 이 기금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신탁에 이전해 놓았을 경우.
- ▶ 신탁에 증여하는 것은 직계 가족 구성원이든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적이어야 하며 그 급부로 어떤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증여세 면제는 아래와 같은 직계 가족 구성원만이 이용가능합니다:
 -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고령 연금 연령에 도달했거나;
 - 서비스 연금 (service pension) 을 받고 보훈 연금 (veteran's pension) 연령에 이르렀거나;
 - 보훈 소득 보조 부가금 (veterans' income support supplement) 을 받고 그 지급금을 받을 자격 연령에 이르렀을 때.
- ▶ 중증 장애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 부모 (양부모와 의붓 부모 포함)
 -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의 법적 후견인 및 중증 장애인이 18세 미만이었을 때 법적 후견인이었던 사람
 - 조부모
 - 형제 자매 (양 형제 자매와 의붓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자매 포함)
- ▶ 증여세 면제는 최대 \$500,000까지의 증여에 적용(물가 연동 대상이 아님)됩니다. 이 면제 조치의 자격 조건으로는 귀하가 정규 지급금을 받고있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어야하며 **Centrelink** 나 **DVA**에 해당 면제 조치를 이용할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면제 조치를 완전히 다 이용하고 난 후에 직계 가족 구성원들이 추가로 기부하게 되면 일반 증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 ▶ 증여가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거나 직계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면제 범위를 넘어 증여한 경우는 일반 증여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예

David을 수익자로하는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인 Paul (65세)과 Lucy (63세)는 모두 고령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 신탁이 설립되었을 때 두 사람은 이 신탁에 \$300,000을 냈습니다. 2012년에 이 신탁 기금의 대부분이 David 케어와 수용 시설에 쓰여졌고 Paul과 Lucy는 추가로 신탁에 \$300,000을 내놓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은 두 사람이 낸 첫번째 증여 전체와 두번째 증여중 \$200,000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증여 규정은 초과 금액 \$100,000에 대해 적용됩니다.

- ▶ 자격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직계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 파트너가 자격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일단 지금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기부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연령에 도달한 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면제를 전면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즉, 노후 연금이나 관련 보훈 수당을 청구하기 최대 5년전에 자산을 신탁에 넣어두면 귀하가 소득 보조를 받을 때 이 자산이 가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소득 보조를 받고 있다면 이 증여는 귀하가 자격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반 증여 규정하에서 계산됩니다.

예

Greg는 중증 장애인이며, 아버지 John(58세)은 Greg을 위해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2006년 10월 1일에 John은 신탁에 \$500,000을 기증했습니다. 이 경우 John은 아직 노후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Centrelink에 증여세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1일에 John은 이 신탁에 추가로 \$500,000을 기증했습니다. 이 신탁은 2006년 John의 첫 기부금 이후 아무런 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 John은 65세가 되어 노후 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2006년에 John의 기부액은 노후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2011의 증여는 노후 연금을 청구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가 직계 가족 구성원이므로 John의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의 증여는 사회 보장 자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위의 예로부터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Greg의 조모 Marie는 2012년에 Greg 신탁에 \$200,000을 기부합니다. Marie는 현재 노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므로 그녀의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자격이 있으므로 Marie는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John은 2013년에 65세가 되어 노후 연금을 신청합니다. 그가 노후 연금을 신청할 때 이용 가능한 증여 면제액은 \$300,000입니다. John이 2011년 증여한 \$500,000중 일부에 증여세 면제 자격이 있으며, 2011년에 내놓은 \$200,000은 일반 증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위의 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2012년의 증여가 (Greg의 조모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구인 Paul로부터 받은 것이었다면 Paul이 직계 가족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기부금은 증여세 면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John은 전면적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증여세 면제는 개별적인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해당하므로 한 가족안에 두 자녀가 자격이 있다면 자격 연령에 도달한 직계 가족 구성원은 각각의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으로 최대 \$500,000까지의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을 위한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법규는 가족 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해두기를 희망하는 가정들을 격려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사람들이 신탁을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히 소득 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이 면제 조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귀하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귀하와 가족의 상황에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 두어야 할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 보장법 안내* (http://www.facsia.gov.au/guides_acts/ssg/ssg-rm.html)를 참조하거나 또는 가까운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증 장애인'인가요?

중증 장애인은 16세 이상으로:

- ▶ 장애로 인해 장애 보조 연금(*사회 보장법*) 또는 무력자 서비스 연금 (*invalidity service pension*) 이나 무력자 소득 보조 부가금 (*invalidity income support supplement*) (*보훈 수당법*) 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 ▶ 해당 장애로 인해 일하지않고 있으며 관련 최저 임금을 받을 수준으로 일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을 위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호스텔, 집단 가옥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준 주 정부간의 협정하에 해당 케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받고 있거나;
 - 장애가 있으며 자신을 위한 유일한 케어 제공자가 있을 경우 그 케어 제공자가 *Carer Payment*나 *Carer Allowance*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16세 미만의 경우, *사회 보장법* 하에서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어린이' 라면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설립하려는 신탁 대상자가 해당 신탁 규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중증 장애' 인에 해당하는 지를 **Centrelink**나 **DVA**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Centrelink 지급금: 13 10 21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가까운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에 연락;
- ▶ DVA 지급금: Trusts & Companies Team 1800 550 462에 전화하거나 Trusts&Companies@dva.gov.au에 이메일, 또는 PO Box 21, Woden ACT 2606에 우편 문의.

중증 장애인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에 들 수있나요?

아니오. 중증 장애인 한 사람당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오로지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존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신탁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을 위한 면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용 시설 및 케어의 필요성'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유일한 목적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수용 시설 및 케어 필요성 조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적절한 수용 시설 및 케어 필요성의 범위는 *사회 보장법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원칙으로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아래에 한합니다:

-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용 시설 비용;

-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케어 비용;
- ▶ 전문 수탁자에게 내는 수수료등 부차적인 비용및 투자와 회계 비용.

수용 시설 이외에:

- ▶ 신탁은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것들에만 경비를 지출해야하며;
- ▶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하루 하루의 경비를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즉, 이러한 경비는 그 사람 개인의 소득 보조 지급금이나 기타 자산, 소득으로 충당해야 함.

각 케이스마다 무엇이 적절한 지는 장애의 정도와 관련 당사자가 필요로하는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중증 장애인에게 적절하다고해서 이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장애인인 수익자가 그 장애로 인해 어떤 목적의 수용 시설과 케어를 필요로하는 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적절한 케어및 수용 시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 보장법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특정 인물을 위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할 수있는 것과 할 수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댓가를 지불할 수있나요?

아니오. 케어와 수용 시설을 제공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댓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 ▶ 수익자에게 케어를 제공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수익자의 자녀에게 댓가를 지불할 수 없음;
- ▶ 수익자의 수용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수익자의 자녀에게 댓가를 지불할 수 없음;
- ▶ 직계 가족 구성원이나 수익자의 자녀에게 가옥을 구입하거나 임대(‘노인을 위한 별채’ 포함)할 수 없음.

(11페이지, ‘직계 가족 구성원’의 정의 참조)

케어와 수용 시설 이외에 어떤 것을 제공할 수있나요?

중증 장애인에게 ‘수용 시설과 케어’ 범위를 넘어 다른 것 (휴일이나 TV, CD 플레이어, 의류나 평범한 가구등은 장애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을 제공하고 싶다면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이러한 것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별도의 신탁을 설립할 수있는 데, 즉 케어와 수용 시설 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신탁 증서나 유언장을 통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거나, 기타 다른 비용을 충당하기위해 더 일반적인 형태의 신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없이 일반 신탁을 설립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물론이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 ▶ 소득 보조 자격 유무;

- ▶ 수탁자는 ‘적절한 케어와 수용 시설’ 이상으로 광범위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 귀하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주택과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가;
- ▶ 나중에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전이 필요한가;
- ▶ 귀하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다루어야 하는가;
- ▶ 수탁자가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과 일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인가.

신탁이라면 모두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오.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신탁의 조건이 이러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규정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탁이라면 모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해당 신탁이 구체적인 필요 조건과 일치하는 한 신탁 자체내에 개별 규정을 가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샘플 신탁 증서’(3절 참조)가 바로 그것으로, 이것은 서류 형태의 한 샘플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귀하는 물론 귀하의 자문가가 그 조건 모두를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신탁이 법규의 필요 조건과 일치하는 한 귀하의 개인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절에 제시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샘플에서는 의무(변화시킬 수 없음) 규정과 선택(변화시킬 수 있음) 규정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샘플 증서에 있는 일부 규정 중에는 해당 신탁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면 의무 조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약화’시킬 수는 없으나, 대신 해당 신탁의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신탁의 재산을 수용 시설이나 케어 전반에 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신탁의 자산 사용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신탁 증서에 집단 가옥 형태의 수용 시설일 때에만 지불한다고 명시해두면 됩니다. 그 목적이 적절한 케어나 수용 시설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이 신탁도 여전히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그 밖에 다른 신탁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항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의 샘플에서는 수탁자가 자문을 구해야 할 사람과 관련해, 수탁자는 ‘최소 1년마다 주요 수익자의 필요와 요구를 재검토해야 하며 그 주요 수익자를 직접적으로 돌보아 주는 케어 제공자와 주요 수익자(가능하다면)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물론 중증 장애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예,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자)과 협의하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친구나 의료 자문관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또는 일체히 생략(이 경우 수탁자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하기도 합니다.

누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나요?

법규상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어느 누구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9페이지, 5.1항 신탁 증서 샘플 참조). 수탁자로는 부모 및 직계 가족 구성원, 회계사, 변호사, 법인 수탁, 주 수탁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규의 필요 조건은 *사회 보장법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각 주에서 제정한 법규가 수탁자의 의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줄 수 있는 내용에 제한 조치가 있나요?

예. 신탁에 증여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자산으로는:

- ▶ 수익자가 받은 보상금 (예, 자동차 사고로 받은 손해 배상금);
- ▶ 수익자 자신(또는 그 배우자)이 기부한 재산: 단, 그 재산이 신탁으로 이전되기 전 3년 이내에 유언장 하에서 또는 연금 사후 수당으로 받은 경우는 증여 가능함.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보상금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존 유지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원하기보다는 소득 보조 자격을 얻을 요량으로 자신의 재산을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에 넣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탁은 더 이상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이 되지 못하며 주요 수익자는 소득 보조 면제 조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소득 보조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한편 Centrelink / DVA에는 일부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며 고의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행위 또는 위반 면제가 중증 장애인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신탁은 중증 장애인인 수익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이 되지 못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더 이상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때 해당 신탁은 그 신탁의 잔여 재산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증서 샘플 (28 페이지, 4번 조항) 참조.

신탁 증서가 허용할 경우, 해당 신탁에 재정 지원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부를 토대로 발생한 잉여 재산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기부자에게 환원 (생존 해있을 경우) 하거나 유언장 하에서 유언 집행자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지분만큼을 그들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자선 단체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산이 기부자에게 환원될 경우 자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소득 보조 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자격이 종료 또는 정지되는 시점이 재산이 그 신탁으로 이전된 지 5년 이내라면 그 재산은 증여 규정 관련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그 신탁에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의 소득 보조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해 보았는데, 제가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귀하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귀하가 얻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으로는:

- ▶ 장애인이 ‘중증’ 장애 (13페이지 참조) 상태가 아니라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 귀하와 중증 장애인 어느 쪽도 소득 보조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의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는 잇점이 없습니다;
- ▶ 귀하나 중증 장애인이 소득 보조에 의지하고있고/또는 그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가 케어와 수용 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귀하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는 잇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에게 케어와 수용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또는 그 반대로 귀하가 이미 준비를 해두었으므로 추가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입니다;
- ▶ 케어와 수용 시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능성 정도라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에 많은 돈을 묶어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없으며 세제상으로 수반되는 결과 (예 소득이 사용되지않고 누적되기만 할 경우) 와 더불어 회계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정을 단순히 케어와 수용 시설 제공을 넘어 좀 더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거나 귀하가 마련해야 할 준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 ▶ 소득 보조가 귀하와 중증 장애인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 ▶ 해당 장애가 심각하여 Centrelink 나 DVA로부터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케어와 수용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현재 또는 귀하의 사후에 보유하고 있고;
- ▶ 이러한 재정이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조 또는 (증여 원칙을 통하여) 귀하 자신의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만큼 많은 액수일 경우;

그렇다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귀하의 중증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상당한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탁을 고려한 미래 설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3절

샘플: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증서

이 신탁 증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 신탁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법규를 준수하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서는 그 자체로 단독의 신탁 증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언장의 별첨 문서로서 그 유언장의 조항 전반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제시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전반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귀하의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신탁 증서를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조항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 (116 페이지 참조) 하고 있는 한 얼마간 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샘플 증서에서는 의무 (변화시킬 수 없음) 조항과 선택 (변화시킬 수 있음) 조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규정을 잘 알고있는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탁을 준비하고 샘플 신탁 증서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탁 증서는 최대한 ‘알기 쉬운 영어’ 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신탁과 법률 문서에 익숙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증서를 이해하는 열쇠는 먼저 주의깊게 천천히 한 조항 한 조항씩,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의 (35-36 페이지, 9.3항) 를 확인해 가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증서의 내용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귀하의 변호사나 경제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Model trust deed for special disability trusts

Table of contents

1	Establishment of Trust.....	23
1.1	The Principal Beneficiary	23
1.2	Declaration of Trust.....	23
1.3	Name of Trust	23
1.4	Application of Operative Provisions	23
1.5	Duration of Trust	23
1.6	The Appointor.....	23
1.7	Exclusion of Settlers *	24
2	Administration of the Trust	24
2.1	Sole Purpose of Trust.....	24
2.2	Priority of Principal Beneficiary	25
2.3	Right of Occupation.....	25
2.4	Power to Accumulate Income.....	25
3	Trust Property Requirements.....	26
3.1	Contributions.....	26
3.2	Non-acceptable Contributions	26
3.3	Restrictions on Use of Trust Funds	27
3.4	Prohibition on Borrowing.....	27
3.5	Further Prohibitions with regard to Related Parties.....	27
3.6	Prohibition on Lending to Principal Beneficiary	28
3.7	Donor Register	28
4	End of Trust.....	28
4.1	Balance of Trust at the End Date	28
4.2	Distribution of Trust Property at the End Date.....	29
5	The Trustee	29
5.1	Qualifications of the Trustee	29
5.2	Resignation of Trustee	30
5.3	Trustee's remuneration	30
5.4	Delegation of Powers.....	30
5.5	Extent of Trustee Responsibility	31
5.6	Liability and Indemnity.....	31

* Omit if trust established under a Will

6	Management of Trust Funds	31
6.1	Powers of Trustee	31
6.2	Standard of Care	31
6.3	Investment Strategy	32
7	Appointment and Removal of Trustee	32
8	Reporting & Audit Requirements	33
8.1	Keep accounts.....	33
8.2	Financial Statements & Reporting.....	33
8.3	Audit Requirements.....	33
9	Miscellaneous	34
9.1	Waiver of Contravention	34
9.2	Amending the Trust	34
9.3	Definitions	35
9.4	Interpretation.....	36
9.5	Applicable Law	37
	Execution.....	38
	Schedule A	39
	Schedule B	40

THIS DEED OF TRUST is made on [date] *

PARTIES: *

1. [Settlor Name and address to be advised] ('the settlor').
2. [Name and address to be advised] ('the Trustee').

INTRODUCTION: *

[Commentary: This section and clauses 1 and 2 set the scene for the formal creation of the trust and its basic provisions. If you set up the trust by a Will, these things will be covered in the Will. Definitions of some of the expressions used in the trust are set out in clause 9.3 (page 35).]

- A. The settlor has decided to create a Trust Fund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vision for the care and accommodation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the trust, as described in these terms of trust.

[Commentary: For a trust to exist, it must hold property. The Settlor contributes an initial amount (typically \$10 –see sub-clause D) so that a trust can be established. The Settlor is someone independent of the other parties such as the trustees and/or appointer.]

- B. The intention of the settlor is to establish a Trust Fund that qualifies as a special disability trust,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al Security Act 1991 or the Veterans' Entitlement Act 1986, whichever is applicable to any Donor and/or the Principal Beneficiary.

- C. The settlor has decided to appoint the Trustee as Trustee of this trust, and the Trustee has consented to become the first Trustee upon the trusts and with and subject to the powers and provisions contained in these terms of trust.

[Commentary: A trustee is a person or corporation who operates the trust. The terms of the trust deed will determine how the trustee will administer the funds held in the trust. The trustee has a duty to act honestly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The trustee must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trust deed and relevant state or territory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rustees.]

- D. The settlor has paid or will pay the sum of \$10.00 to commence the trust ('the settled sum').

- E. The parties anticipate that further Contributions will be paid to the Trustee in respect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 Omit if trust established under a Will

PROVISIONS

1 Establishment of Trust

1.1 The Principal Beneficiary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the trust is [name and address to be advised] ('the Principal Beneficiary').

[Commentary: The principal beneficiary is the severely disabled person as defined on page 13.]

1.2 Declaration of Trust

The Trustee HEREBY DECLARES that in respect of the trust the Trustee will hold the Trust Fund and the income arising therefrom upon trust during the lifetime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solely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and with and subject to the power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mainder of these terms of trust.

1.3 Name of Trust

The trust shall be known as [Name of Trust] Trust.

1.4 Application of Operative Provisions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the operative provisions set out in the remainder of these terms of trust will apply in respect of the trust established pursuant to these terms of trust.

1.5 Duration of Trust

The trust will end on the earlier of:

- (a) the date of death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 (b) if assets are fully expended on the Principal Beneficiary, the date of such full expenditure; or
- (c) any earlier date as required by law ('the end date').

[Commentary: For example: State law sets out the number of years that a trust may exist.]

1.6 The Appointor

[Commentary: An Appointor can be any person or corporation who is not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Settlor. An appointor is not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 trust. See the explanation of the role of the appointor on pages 5, 32–33.]

- (a) The initial Appointor[s] of the trust [is/are] [Name and address to be advised] ('the Appointor');
- (b) An Appointor shall have the power to nominate any person or persons or entity to act together with or in his, her or its place and may place such conditions or restrictions on such nomination (and may make such nomination revocable or irrevocable) by any notice in writing to the trustee, or by Will, save that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Appointor, an Appointor must obtain from all of the other Appointors the prior written consent to all of the terms of any nomination pursuant to this subclause;

- (c) A successive Appointor, if the nomination is otherwise silent, shall also have the power to nominate a successor or alternate Appointor as if they were the initial Appointor;
- (d) The Appointor shall exercise their power in accordance with clause 7 and any power of the Appointor may be exercised by the Trustee in the absence of the Appointor at any time.

1.7 Exclusion of Settlers *

[Commentary: The intention of this provision is to prevent the person who formally sets up the trust from still being seen as the owner of the trust assets and income for tax purposes. To ensure this, the settlor has nothing further to do with the trust. The settlor will often be a more distant family member, who will not have an ongoing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trust.]

Notwithstanding anything express or implied in these terms of trust:

- (a) The trust will be possessed and enjoyed to the entire exclusion of the settlor and of any benefit to the settlor by contract or otherwise, and any resulting trust in favour of the settlor is expressly negated;
- (b) No part of the trust will be paid, lent to, or applied for either the direct or indirect benefit of the settlor in any manner or in any circumstances;
- (c) No power in these terms of trust, or appointment made pursuant to these terms of trust or conferred by law upon the Trustee will be capable of being exercised in such manner that the settlor will or may become entitl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 benefit in any manner or in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2 Administration of the Trust

[Commentary: This clause expresses some of the major points required of special disability trusts: the restriction to care and accommodation, payments not to be made to immediate family for care and repairs and maintenance, and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person with the disability as the focus of the trust.]

2.1 Sole Purpose of Trust

- (a) The Trustee must hold the Trust Fund and the income derived in each accounting period on trust and pay or apply all or any part of the income and all or any part of the Trust Fund for the sole purpose, as defined in the remainder of this clause;
- (b) No part of the income or the Trust Fund may be used for any payment of Immediate Family Members or a Child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including:
 - (i)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or
 - (ii) repair and maintenance of accommodation for the Principal Beneficiary;
- (c) The operation of sub-clause (a) does not preclude the Trustee from applying any part of the income or the Trust Fund for an ancillary purpose.

* Omit if trust established under a Will

- (d) For the purpose of this deed the 'sole purpose' means the reasonable care and accommodation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as determined by the Trustee from time to time but:
 - (i) shall not include such daily living costs or expenses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that do not relate to reasonable care and accommodation needs;
 - (ii) shall not include expenditure which is primarily for the direct or indirect benefit of any other person; and

[Commentary: This sub-paragraph does not include situations where the residence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provides an incidental benefit to their partner.]

- (iii) must be in accordance with any requirement or determination made by the Secretary from time to time;
- (e) For the purpose of these terms of trust, 'ancillary purpose' means a purpose that is necessary or desirable to achieve the sole purpose of the trust.

2.2 Priority of Principal Beneficiary

[Commentary: This clause i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trustee considers w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erson with a severe disability.]

In carrying 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lause, the Trustee is required:

- (a) to have regard to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Principal Beneficiary's condition as well as the current and future care needs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 (b)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are to take precedence over any interest or expectancy as to net income or capital of any Donor or Specified Beneficiary; and
- (c) to review the needs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at least annually and wherever possible, consult with the Principal Beneficiary's immediate caregiver and the Principal Beneficiary.

[Commentary: A more frequent consultation period may be preferable.]

2.3 Right of Occupation

With respect to all real property contributed to the Trust Fund by a Donor or acquired by the Trustee, in which the Principal Beneficiary lives ('the Residence'):

- (a) the Principal Beneficiary shall have a personal right of occupation in respect of the Residence for as long as they wish for their lifetime; and
- (b) the Residence may be sold and the proceeds used to acquire a substituted Residence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sub-clause may apply, provided that in exercising their power pursuant to this paragraph, the Trustee shall act to achieve the sole and ancillary purposes of the trust, and have regard to the priority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as set out in the preceding sub-clauses.

2.4 Power to Accumulate Income

The Trustee may, in any Accounting Period, accumulate and retain as much of the income of the Trust Fund, if any, as is required to achieve the sole or ancillary purposes of the trust during that Accounting Period, as an addition to the Trust Fund.

[Commentary: This clause allows the trustee to decide to save some of the income each year rather than having to distribute it all. This gives the trustee flexibility in administering the trust assets and income. There may be tax issues relating to accumulation of income so the trustee should get professional advice before making a decision.

Paying income from a special disability trust for the care and accommodation needs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with a severe disability will not affect that person's income support entitlements.]

3 Trust Property Requirements

3.1 Contributions

The Trustee may accept Contributions from anyone who is eligible to be a Donor.

[Commentary: These provisions regulate the sources of the funds of the trust, consistent with Social Security and DVA rules. In particular, they prevent the person with a severe disability from providing funds to their 'own' trust except in limited circumstances.]

3.2 Non-acceptable Contributions

The Trustee shall not accept any of the following:

- (a) Contributions made by the Settlor other than the settled sum *;
- (b) conditional Contributions by any Donor;

[Commentary: This means that a donor cannot control how their gift is used. For example, if a person gives a property to the trust they cannot demand that the trust not sell the property. Once a gift has been made to the trust, it is the trustee who will decide how to use the trust assets for the care and accommodation needs of the beneficiary. This does not, however, stop the donor nominating to whom their proportion of the trust assets should be distributed when the trust comes to an end. See clause 4.2.]

- (c) any asset transferred to the trust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the Principal Beneficiary's Partner unless:
 - (i) the asset is all or part of a bequest, or a superannuation death benefit; and
 - (ii) the bequest or superannuation death benefit was received not more than three years before the transfer;
- (d) any Compensation received by or on behalf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 (e) any Contribution that would cause the Trustee to be in breach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set out in these terms of trust.

[Commentary: Clauses 3.3, 3.4 and 3.5 are intended to prevent the trust channelling assets back to the family, or undertaking other transactions with closely related parties, which might take the focus of the trust away from providing care or accommodation for the person with a severe disability and which would infringe the special disability trust rules.]

* Omit if trust established under a Will

3.3 Restrictions on Use of Trust Funds

- (a) The Trust Fund or any of the income of the Trust Fund cannot be used to purchase or lease property from an Immediate Family Member or a Child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even if that property is to be used for the Principal Beneficiary's accommodation;

[Commentary: For example, the trust could not buy the property from an immediate family member. However, the immediate family member could give the property to the trust.]

- (b) For the purpose of this sub-clause, 'property' includes:

- (i) a right to accommodation for life in a residence; and
- (ii) a life interest in a residence.

3.4 Prohibition on Borrowing

The trustee must not borrow money, whether from a related or non-related party.

3.5 Further Prohibitions with regard to Related Parties

[Commentary: The objective of the trust fund is to pay for the principal beneficiary's care and accommodation costs. Lending funds to the related parties is not consistent with this objective.]

- (a) The Trustee must not;

- (i) lend from or give any other financial assistance using the Trust Fund or the income of the Trust Fund to; or
- (ii) intentionally acquire, except by way of a Contribution, property (other than a listed security acquired at market value) from; or
- (iii) employ, engage or pay any agent, contractor or professional person for any services in relation to the trust fund or the Principal Beneficiary who is; or
- (iv) enter into an uncommercial transaction with any person who is;

a related party;

- (b)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related party' means:

- (i) the Settlor*;
- (ii) the Trustee, other than a Professional Truste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5.1(a)(iii);
- (iii) a Donor;
- (iv) the Principal Beneficiary;
- (v) the Appointor;
- (vi) an Immediate Family Member;
- (vii) a parent or a sibling of anyone in any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 (viii) a descendant of anyone in any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 (ix) a Partner of anyone in any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or
- (x) any entity (other than widely held entities) of which anyone in the any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is a director, shareholder, trustee or holds the power to appoint a director or trustee.

* Omit if trust established under a Will

3.6 Prohibition on Lending to Principal Beneficiary

[Commentary: The objective of the trust fund is to pay for the principal beneficiary's care and accommodation costs. Lending funds to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their partner is not consistent with this objective.]

The Trustee must not lend any of the Trust Fund or any of the income of the Trust Fund to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the Principal Beneficiary's Partner.

3.7 Donor Register

[Commentary: Keeping a record of the donors is important for establishing who receives the assets of the trust when it comes to an end. It can also be used to advise Centrelink of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trust.]

The Trustee must maintain a register of all Donors to the Trust Fun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A.

4 End of Trust

[Commentary: This provision regulates the winding up of the trust when it is no longer required or otherwise comes to an end. It allows the people who contribute assets to receive back their contributions, on a proportional basis, or to nominate someone else to whom the assets should be transferred. A parent of the beneficiary with a severe disability could nominate their other children or their grandchildren, for example. There may be issues under the gifting rules for someone who contributed assets if the trust comes to an end within 5 years of the contribution. In that case, you may need to obtain advice. This may also be a consideration in deciding whom to nominate to receive any assets, which become available at the end of the trust.]

4.1 Balance of Trust at the End Date

- (a) If, at the end date, after the payment of all taxes and expenses, the Trust Fund has not been fully expended on the purposes of the trust, or the income has not been fully allocated, the property of the Trust Fund and any unallocated income ('the balance of the Trust')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remainder of this clause;
- (b) If there is more than one Donor to the Trust Fund, the trustee shall identify each Donor's Contributions to the Trust Fund;
 - (i) calculate the percentage of each Donor's Contributions to the overall Contributions to the Trust Fund; and
 - (ii) apply the percentage to the balance of the Trust to determine the balance of each Donor's Contribution ('the Donor's Contribution Balance');
- (c) On the end date, the settled sum shall be deemed a Contribution made:
 - (i) If only one Donor, by the Donor; or
 - (ii) If more than one Donor, by the Donor who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or
 - (iii) If more than one made the equal largest Contribution, equally between those Donors.

4.2 Distribution of Trust Property at the End Date

- (a) The Trustee anticipates that a Donor may make a nomination at the time of contribut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ll or part of his, her or its Contribution Balance at the end date;
- (b) During the term of the trust:
 - (i) a Donor who is an individual may alter his or her nomination by making a subsequent valid nomination during the Donor's lifetime; and
 - (ii) a Donor that is an entity (such as the trustee of a deceased estate, the trustee of any other trust or a corporation) may alter its nomination by making a subsequent valid nomination for as long as the entity exists;

and the Trustee shall only have regard to the last valid nomination made by the Donor;

- (c) For any such nomination or subsequent nomination to be valid, the nomination must be:
 - (i) in the form set out in Schedule B;
 - (ii) submitted in writing to the Trustee; and
 - (iii) formally accepted by the Trustee in writing, and an endorsement by the Trustee on the form is sufficient for this purpose;
- (d) The Trustee may in its absolute discretion, refuse to accept a nomination or a subsequent nomination;
- (e) Where a Donor has nominated his or her estate, or where a Donor's Contribution Balance is to be dealt with under the terms of the Donor's last Will, an individual Donor is not required to notify the Trustee of any change to his or her last Will;

[Commentary: Note: alteration of a nomination once the trust is established may have state duty, capital gains tax and other tax consequences for the trust.]

- (f) At the end date, the Trustee shall distribute the Donor's Contribution Balance to the Specified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Donor's last valid nomination in Schedule B;
- (g) If, with regard to all or any part of the Donor's Contribution Balance, the Donor has not made a valid nomination, or if any Specified Beneficiary cannot receive a distribution, the Trustee shall distribute that part of the Donor's Contribution Balance to the Donor, if living at the end date, or if not living, to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5 The Trustee

5.1 Qualifications of the Trustee

[Commentary: The requirement for at least two trustees is aimed at protecting the principal beneficiary.]

- (a) The Trustee must:
 - (i) in relation to an individual:

- (1) be an Australian resident;
 - (2) not have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or arising out of a law of the Commonwealth, a State, Territory or a foreign country, being an offence of dishonest conduct;
 - (3) not have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or arising out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Administration Act or the Veterans' Entitlement Act; and
 - (4) not have been disqualified at any time from managing corporations under the Corporations Act 2001;
- (ii)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be a corporation with two or more directors wh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5.1(a)(i); or
 - (iii) be a Professional Trustee wh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s 5.1(a)(i) or 5.1(a)(ii);
- (b) If at any time the Trustee is not a corporation or a Professional Trustee, there must be two or more individuals acting jointly as Trustee.

5.2 Resignation of Trustee

Any Trustee may resign office by notice in writing given to the other Trustees and the Appointor (if any) and such resignation shall take effect upon such notice being given.

5.3 Trustee's remuneration

- (a) Any Trustee who is a Trustee Corporation shall be entitled to make all such usual and proper charges for both professional and other services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Trust Fund and for the trustee's time and trouble as the trustee would have been entitled to make if not a Trustee and so employed;
- (b) Any trustee who is a Professional Trustee other than a Trustee Corporation, will be entitled to charge and be paid all professional or other charges for any business or act done by him or her, or his or her firm, in connection with the special disability fund hereof including acts which a trustee could have done personally as if he or she were not such a trustee.

[Commentary: You can make broader provisions about remuneration to trustees if you wish,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payments to immediate family members and having regard to the sole purpose of the trust.]

5.4 Delegation of Powers

The Trustee may in writing delegate the exercise of all or any of the powers or discretion hereby conferred on the trustee to any other person or persons and may execute any powers of attorney or other instrument necessary to give effect to such purpose, however the Trustee (including the delegate) must at all times satisfy the requirements in sub-clause 5.1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Trustee.

[Commentary: The power of delegation operates in situations where the trustee is unable to act – for example, where the trustee has gone away for a time, or has been hospitalised for a short time but decisions need to be made about the operation of the trust. This clause should be used where the trustee does not want to resign, or should not be forced to resign, but is unable to exercise their duties for a definite period of time.]

5.5 Extent of Trustee Responsibility

No Trustee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ccasioned by the exercise of any discretion or power hereby or by law conferred on the Trustee or by failure to exercise any such discretion or power where the Trustee 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Commentary: This clause limits the trustees' liability for mistakes or action which cause loss to the trust. The trustees will only be liable for acting knowingly and deliberately wrongly. This gives the trustees protection from many possible complaints, and confirms the trustees' freedom of action. However, if you want the trustees to be subject to stricter control, you can alter this clause to suit your requirements.]

5.6 Liability and Indemnity

[Commentary: This gives the trustees the right to be covered by the trust for any expenses or liabilities they incur from acting as trustees.]

Provided the Trustee has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the Trustee shall be entitled:

- (a) to be reimbursed and indemnified for all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legal costs and state duty) incurred in relation to establishing, operating, administering, amending, terminating and winding up the Trust Fund; and
- (b) to be indemnified out of the assets for the time being comprising the Trust Fund against liabilities incurred by it in the execution or attempted execu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to exercise any of the trusts authorities powers and discretions hereof or by virtue of being the Trustee of the trust;

but shall have no recourse against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any of the Donors or Specified Beneficiaries to meet such indemnity.

6 Management of Trust Funds

[Commentary: These provisions require the trustee to act prudently in managing the trust assets and investments.]

6.1 Powers of Trustee

- (a) The Trustee shall have such powers a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se terms of trust and to fulfil the sole and ancillary purposes, and may nominate any specific powers that they may require, save that the Trustees must at all times administer the fu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Act governing Trustees, the Social Security Act, the Administration Act and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and these terms of trust;
- (b)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above sub-clause, the Trustee shall have the specific power to open an account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6.2 Standard of Care

The Trustee must, in managing the Trust Fund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Trust Fund (including exercising a power of investment):

- (a) if the Trustee's profession, business or employment is or includes acting as a Trustee or investing money on behalf of other persons, exercise the care, diligence and skill that a prudent person engaged in that profession, business or employment would exercise in managing the affairs of other persons; or
- (b) if the Trustee is not engaged in such a profession, business or employment, exercise the care, diligence and skill that a prudent person would exercise in managing the affairs of other persons.

6.3 Investment Strategy

The Trustee must formulate and give effect to an investment strategy,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and fulfilling the sole purpose as defined in clause 2. Subject to these needs, the investment strategy must have regard to:

- (a) the risk involved in making, holding and realising, and the likely return from, the Trust Fund's investments having regard to its objectives and its expected cash flow requirements;
- (b) the composition of the Trust Fund's investments as a whole including the extent to which the investments are diverse or involve the Trust in being exposed to risks from inadequate diversification;
- (c) the effect of the proposed investment in relation to the tax liability of the trust;
- (d) the liquidity of the Trust Fund's investments having regard to its expected cash flow requirements; and
- (e) the ability of the Trust Fund to discharge its existing and prospective liabilities.

7 Appointment and Removal of Trustee

[Commentary: This clause shows the role of the appointor to control future changes of trustee. It also provides the means to resolve any deadlocks between the trustees, avoiding the need for court proceedings. You may adopt other means of dealing with any disputes.]

- (a) Subject to sub-clause 5.1, the Appointor may at any time by writing:
 - (i) remove from office any Trustee (other than a Trustee appointed by the Court);
 - (ii) appoint a new or additional Trustee; or
 - (iii) appoint a replacement Trustee for any Trustee who resigns as Trustee or ceases to be Trustee under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of trustor law;
- (b) If any Trustee forms the opinion that a deadlock exists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the Trustees shall then be deemed to have resigned from their office and the Appointor, or if no Appointor, the resigning Trustees shall appoint a Professional Trustee (who is not a resigning Trustee)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8 Reporting & Audit Requirements

8.1 Keep Accounts

The Trustee must keep or cause to be kept proper accounts in respect of all receipts and payments on account of the Trust Fund and all dealings connected with the Trust Fund.

8.2 Financial Statements & Reporting

[Commentary: The financial statements make up a financial report, which details the assets and liabilities, and income and expenditure of the trust.]

- (a)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each Accounting Period, the Trustee must prepare or cause to be prepared written financial statements showing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trust at the end of that Accounting Period;
- (b) The financial statements must:
 - (i) where the Trustee is or includes a Trustee Corporation,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ll regulatory and legislative requirements applying to a Trustee Corporation; or
 - (ii) otherwise, be prepared by a member of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CPA Australia or the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who is not an Immediate Family Member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 (c) The Trustee must, on or before 31 March each year, forward to the Secretary the financial statements in relation to the previous financial year.

8.3 Audit Requirements

[Commentary: An audit is a formal examination of the trust's accounts and financial position by an independent party. It may also check o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Centrelink and DVA requirements.]

- (a) An audit of the trust may be requested for the previous financial year ended on 30 June or other period as determined by legislative instrument pursuant to the Social Security Act or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by:
 - (i) the Principal Beneficiary;
 - (ii) an Immediate Family Member;
 - (iii) a legal guardian or financial administrator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under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law);
 - (iv) a person acting as guardian for the Principal Beneficiary on a long-term basis; or
 - (v) the Secretary;
- (b) If an audit request is received, the Trustee must within a reasonable time:
 - (i) cause an audit of the trust to be carried out unless already carried out for the relevant time period; and
 - (ii) provide a copy of the audit report to the person requesting the audit, to any guardian or administrator and to the Secretary;

- (c) The audit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ny legislative instrument made pursuant to 1209T(7)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52ZZWG(7)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 (i) where the Trustee is or includes a Trustee Corporation,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ll regulatory and legislative requirements applying to a Trustee Corporation; or
 - (ii) otherwise, be carried out by a member of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CPA Australia or the 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 who is not an Immediate Family Member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the person who prepared the Financial Statements.

9 Miscellaneous

9.1 Waiver of Contravention

[Commentary: This sub-clause gives the trustees the power to seek approval from Centrelink or DVA for the trust to continue as a special disability trust if the rules for special disability trusts have been infringed in some way.]

The Trustee shall have the power to:

- (a) seek a waiver of contravention from the Secretary in relation to contravention of any requirement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by the trust which would disqualify the trust from being a special disability trust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or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if not for the contravention; and
- (b) take the necessary step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by the Secretary by way of a waiver notice under section 1209U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section 52AAWH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and any related legislative instrument made pursuant to these sections.

9.2 Amending the Trust

[Commentary: Another important role for the appointor.]

- (a) Save as provided in this sub-clause the terms of these terms of trust shall not be capable of being revoked added to or varied;
- (b) If there is for the time being an Appointor, the Trustee with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Appointor,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by Deed amend the provisions whether of these terms of trust or of any Deed executed pursuant to this sub-clause but so that such amendment:
 - (i) shall be made only if it would not cause the trust to become non-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3.18A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Division 11B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in relation to special disability trusts; and
 - (ii) does not infringe any law against perpetuities; and
 - (iii) shall be made only if it is not made in favour of or for the benefit of or so as to result in any benefit to the settlor; and

- (iv) does not affect the beneficial entitlement to any amount allocated for or otherwise vested in the Principal Beneficiary prior to the date of the amendment.
- (c) The operation of this sub-clause shall not prevent:
 - (i) the Trustee accepting a nomin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2; and
 - (ii) the Trustee exercising its powers of nomination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6.1.

9.3 Definitions

In these terms of trus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ccounting period' means such period as the Trustee may from time to time determine to be an accounting period and subject to any contrary determination by it means such period of twelve months ending on the 30th day of June in each year PROVIDED firstly that the period commencing on the date of these terms of trust and ending on the 30th day of June next shall be an accounting period and secondly that the period commencing on the first day of July prior to the end date and ending on the end date shall be an accounting period.

'the Administration Act' means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 1999 (Cth).

'the Appointor' means the person or persons named in these terms of trust, subject to any appointment to the contrary made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1.6.

'Child' in relation to a Principal Beneficiary has the meaning given to it by section 1209R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ection 52ZZZWE(5)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Compensation' has the meaning given to it under Part 1.2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under Division 5A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Contributions' are money, investments and other assets, donations, gifts, endowments, trust distribution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assistance paid or transferred by a Donor on an unconditional basis and accepted by the Trustee as additions to the Trust.

'Donor' means any person who makes a Contribution to the Trust Fund, but who is not the Settlor.

'Immediate family member'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3 (1)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ection 5Q(1)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Invest' means employ funds in a manner permitted by these terms of trust and 'investment' shall have a corresponding meaning.

'Partner'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4(1)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ection 5E(1)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whichever is applicable.

'Professional Trustee' means:

- (a) a Trustee Corporation; or
- (b) an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within the meaning of the (NSW) Legal Profession Act 2004 or the equivalent within its legislative equivalent in other Australian States or Territories.

'the Principal Beneficiary' means the person named in these terms of trust as the principal beneficiary and who fulfil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ection 1209M of the Social Security Act or 52ZZZWA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Secretary'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3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ection 5Q of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the Social Security Act' means the Social Security Act 1991 (Cth).

'Specified Beneficiary' means a person or entity nominated to receive a residuary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clause 4 and Schedule B.

'the Trustee' means the Trustee or Trustees for the time being of this Trust (as named in these terms of trust) whether original, additional or substituted.

'the Trust Fund' means:

- (a) the settled sum;
- (b) all moneys and other property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paid or transferred to and accepted by the Trustee as additions to the Trust Fund;
- (c) the accumulation of net income as provided for in sub-clause 2.4;
- (d) all accretions to the Trust Fund;
- (e) the investments and property from time to time representing the moneys property accumulations accretions and additions or any part or parts thereof respectively.

'Trustee Corporation' means:

- (a) a corporate body authorised by and regulated under the (NSW) Trustee Companies Act 1964 or its equivalent in other Australian States or Territories to carry on business as a trustee company; and
- (b) the Public Trustee created by the (NSW) Public Trustee Act 1913 or its equivalent in other Australian States or Territories.

'Uncommercial Transaction' means the provision of a financial or other benefit on terms which:

- (a) would no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the benefit were provided under an agreement arrangement between independent parties dealing at an arm's length with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r
- (b) are more favourable to the party to the transaction (not being the Trustee) than the terms referred to in paragraph (a) of this definition;

and which a reasonable person in the position of the Trustee would not have entered into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Veterans' Entitlement Act' means the Veterans' Entitlements Act 1986 (Cth).

9.4 Interpretation

In these terms of trust:

- (a) The singular includes the plural and vice versa, each gender includes the other genders and references to persons include corporations and other legal persons;

- (b) References to any statute shall include any statutory amendment or re-enactment thereof or statutory provisions substituted therefore;
- (c) Headings are inserted for ease of reference and do not form part of these terms of trust and shall not affect the construction of these terms of trust;
- (d) If by reason of the inclusion of any word, description or provision in these terms of trust, all or any part of these terms of trust would be invalid, then these terms of trust is to be construed as if the word, description or provision were not included in these terms of trust.

9.5 Applicable Law

These terms of trus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State/Territory to be inserted].

SAMPLE

[Commentary: Note: these execution clauses are not required if the trust is established by Will.
A will must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alities in the relevant law governing Wills.]

EXECUTED AS A DEED

SIGNED SEALED AND DELIVERED by]
[SETTLOR]]
in [State] in the presence of:]

.....
Witness

EXECUTED by [TRUSTEE CO] PTY LTD
(ACN [number])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ions Act:

..... **Director**
..... Director/Secretary

SIGNED SEALED AND DELIVERED by]
[TRUSTEE]]
in [State] in the presence of:]

.....
Witness

SIGNED SEALED AND DELIVERED by]
[TRUSTEE]]
in [State] in the presence of:]

.....
Witness

Schedule A

Special Disability Trust Asset Register

Donor One

Full Name:		
Address:		
Contribution description	Market value of Contribution at time of transfer	Date of Contribution

Donor Two

Full Name:		
Address:		
Contribution description	Market value of Contribution at time of transfer	Date of Contribution

Schedule B

Nomination of Specified Beneficiary Form

[If a Donor wishes to make a nomination,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when the Donor makes their initial contribution. This nomination will apply to subsequent contributions made by the same Donor]

Donor Name:

Address:

To the trustee:

Upon the end of the trust, I nominate the following person or persons to receive my Donor's Contribution balance: [Note: Repeat the alternatives below as required]

Specified Beneficiary	% Contribution Balance
<input type="checkbox"/> Myself, or if I am deceased, then my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Note: the Will of the donor, or the intestacy laws as they apply to the donor's estate, will govern the distribution in this case.] %
<input type="checkbox"/>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Note: the Will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or the intestacy laws as they apply to the Principal Beneficiary's estate, will govern the distribution in this case.]	
<input type="checkbox"/> a) My [husband/wife/partner/child/niece/nephew/friend] [full name] of [address]. %
b) If on the end date, [name] is not surviving, then the children of [name] who are surviving, and if more than one as tenants in common in equal shares. %
c) If on the end date, no person specified in two preceding paragraphs is surviving, then the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of [name]. %
<input type="checkbox"/> In accordance with any directions I may leave in my last Will that are specific as to the distribution of my Donor's contribution balance of this trust. [Note: If no directions are included in the Will, the default provisions as set out in subclause 4.2 will apply.] %

[Full name of charity, and if applicable, ACN or ARBN] of %
[address of charity].

[Note: Always include if there are any gifts to charities] **With respect to any distribution to a charitable organisation pursuant to this nomination:**

a) if the organisation cannot receive a gift, then that gift shall be made to the charitable organisation in Australia that the trustees consider most nearly fulfils the objects I intend to benefit; and

b) the receipt of the authorised officer for the time being, of the organisation benefiting under this clause shall be sufficient discharge to the trustees.

Other %

Signed:

[Donor]

[Witness]

Dated:

Dated:

SAMPLE

4절

마치는 말

장애인인 귀하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싶은지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의 비전을 찾아내 어떻게 그 것을 세울 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책임있는 조언을 얻어 귀하의 상황이 내포하는 바를 신중히 고려해 보십시오.

장애인인 귀하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재산 정리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제 및 소득 보조 사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귀하의 상황에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유용성 여부를 고려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저자에 대하여

Stephen Booth

법률 회사 Coleman & Greig의 파트너. 20년 이상을 장애인, 특히 지능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재산 정리 및 유언장 문제, 장애와 관련된 기타 다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 줌. 다수의 부모 모임과 장애인 조직에 참여하는 한편 Intellectual Disability Rights Service (NSW) 와 시민 지원 기관에 관여하고 있음.

또한 지능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유언장 작성 안내 책자를 저술하는 한편 이 분야의 법률 업무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변호사용 소책자의 일부를 담당해 저술.

Allan Swan

전문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 재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회사 Moores Legal의 대표;
- ▶ 계획 설립 및 구조에 대한 조언;
- ▶ 전문 기관 및 분야를 대표한 언론활동;
- ▶ 지역 공동체 모임에 참여;
- ▶ 재산 정리 및 신탁, 관련 주제에 대한 저술 활동 및 강의.

가족 (가족 농장을 포함) 의 경험은 물론 개인적으로 지능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과의 관련이 재산 정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가 됨. 고인이 된 누나 Janice는 중증의 신체 및 지능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며, 친척인 Heather는 일생을 통해 심한 시력 장애와 상대적으로 중증의 자폐증과 싸우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